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6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임호선의원안)	2

I. 개요

1.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1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3.
- (3) 회 부 일 : 2024. 1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임호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62조의2) ○ 요건 : ①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공제대상: 신규 채용 지역인재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채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공제율 : 30% ○ 사후관리: 법인세를 공제받은 이전공공기관이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지역인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임호선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번호 6168)

☐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²⁾로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 지역인재에 지급하는 2년 동안 해당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³⁾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⁴⁾은

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0%(2022년도 이후부터)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⁵⁾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이전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채용시험의 실시단계 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가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인재의 장기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공제받은 이전공공기관이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지역인재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공제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신규 입사자의 근속을 위해 근무여건 개선 등 기관 차원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을 것임.

-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5) 단,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으로 제한하지 않음.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인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전체의 직업 만족도가 제고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혁신도시법」 및 「지방대육성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인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안) 별 비교]

구 분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의무주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채용대상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방대학 졸업(재학)생	지방대학 졸업(재학)생
내용	신규채용 30% 이상	신규채용 35% 이상	신규 채용 35% 이상일 경우 법인세 감면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전체 신규 채용자의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 반면,

「지방대육성법」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공공기관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비수도권 지방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이전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지역인재까지 채용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어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와의 체계적 정합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둘째, 제도 신설을 통한 신규 인원 채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8년 2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비율이 약 41%에 달하는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35%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특례의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인재 채용비율	23%	26%	29%	34%	38%	41%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

6)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

문 의 처

02)6788-5154

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